

보건소 부분감사 결과

감사개요

-  감사기간 : 2016. 6. 14. ~ 6. 16.(3일간)
-  감사범위 : 2014. 9. 24. ~ 2016. 6. 13.까지 업무전반
-  감 사 반 : 법무감사담당 3명
-  중점 감사내용
 -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여부
 - 보건소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 복무관련
 - 각종 업무처리 실태 적정여부 등

감사결과

- 행정상 조치
 - 12건(시정 1, 주의 6, 현지시정 5)
 - 본 처분 7건(시정 1, 주의 6)

감사총평

- 보건소는 의료사업 및 주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등 지역 보건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으로서, 금번 감사에서는 보건소의 주요 추진사항과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,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업무처리 실태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음
- 전기 감사 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,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행정실무에서 취약부서인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의 일반적인 행정수준이 높이 향상 되었으며
- 특히,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의 진료비 감면 추진을 위해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·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본인추가 부담금을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만성질환자의 1회 방문으로 환자 편의를 도모하는 등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

지적사항 일람표

번호	소 관	건 명	행정상 조 치	재정상조치	
				구분	금액(원)
계		7 건	주의 6 시정 1		
1	보건행정담당	보안점검 소홀	주의		
2	〃	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정리 미흡	주의		
3	〃	대가(代價) 지급 부적정	주의		
4	〃	설계용역 준공 시 용역성과품 납품확인 미비	주의		
5	〃	의료폐기물 처리 확인서 누락	주의		
6	진료담당	의료폐기물 보관창고 관리 소홀	시정		
7	〃	세외수입 수납금 지연 납부	주의		

주요지적사항



보건소 분야

- 「예천군 재무회계 규칙」 제80조(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)출납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해야 하고 동 조례 제152조(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)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.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, 지방재정시스템 이해부족과 수납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5년 수불내역에 대해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통장잔액이 불일치함.
- ▶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
-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·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·물품·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.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, 보건소 소회의실 등 LED전등 교체공사의 2건에 대하여 검사 조서 없이 대가를 지급.
- ▶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
- 의료폐기물 현장 안전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의료폐기물의 보관시설은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주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도록 규정되어있음에도, 2016. 6.15. 감사일 현재 확인결과 의료폐기물 전용보관창고에는 소독

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, 주1회 이상 약물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.

- ▶ 의료폐기물 전용보관창고 확보 및 소독장비 등 요건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시정 요구

보건지소, 보건진료소 분야

-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한 기관 중 숙직을 무인화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, 제13조(당직근무자의 일반 업무)에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.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△△보건지소 및 ☆☆☆☆☆☆보건지소에서는 2016년 2회에 걸쳐 당직 및 초과 근무를 하면서 최종퇴청 시 보안점검에 소홀.

- ▶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

- 「지방재정법」 제63조 제2항에 의하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,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(수납금의 납입)에 따라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까지,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함에도, ♥♥보건지소 외 9개 소에서는 붙임 현황과 같이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 진료비 등 45건에 대하여 다음날 까지 세입처리 하지 않고 최대 5일까지 지연하여 납입하였음.

- ▶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



건설공사분야

- 건설공사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과업지시서에 설계도면 및 내역서 등의 용역성과품을 납품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●● 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 설계용역 외 1건을 계약하여 과업수행하면서 과업지시서에 제출하도록 한 용역성과품에 대하여 사진대지 및 완료확인 등의 별도 확인 없이 준공금을 지급하였음.
- ▶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

- 보건소에서는 (주)○○○○ ★★★과 감염성 의료폐기물 처리건을 계약하였으며, 청구가 있을시 청구내역과 의료폐기물 수거 확인서를 비교·확인하여 처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, 2014년 9월분의 의료폐기물 처리비를 지급할 때 청구내역과 의료폐기물 수거 확인서가 상이함에도 별도의 확인 없이 지급하였음
- ▶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